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종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9.

발 의 자 : 김종양 · 고동진 · 김태호
이달희 · 김소희 · 윤상현
배준영 · 박충권 · 강대식
김은혜 · 김위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, 레미콘 · 타워크레인 · 굴착기 등 대형 건설기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현장 근로자와 주민의 생명 ·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작업 ·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 산업재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사용 제한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,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시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률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근로자는 이동 및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 작업을 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

써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0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6항제3호).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의2(위험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) 근로자는 이동 및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75조제6항제3호 중 “제108조제5항”을 “제40조의2, 제108조제5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 <p>제175조(과태료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제40조(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08조제5항, 제123조제2항, 제132조제3항,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</p> <p>4. ~ 18. (생략)</p> <p>⑦ (생략)</p>	<p>제40조의2(위험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) 근로자는 이동 및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는 아니 된다.</p> <p>제175조(과태료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제40조의2, 제108조제5항----- ----- -----</p> <p>4. ~ 1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